

「군포도시공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



2020년 7월 21일

군포도시공사 내규 제36호

## 군포도시공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제정 2020. 7. 2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군포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공사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포도시공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 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시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의 대상)** ① 군포도시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용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군포도시공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모든 학술용역
2. 용역비가 2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또는 공사설계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국가 기금 포함)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부장과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계약·건축·토목·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사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용역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관련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 활용 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사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

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용역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용역심의 요청)** 사업 주관 부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용역사업계획서(개요, 용역비 산출내역, 과업내용, 사전 절차 이행 여부, 향후 추진계획, 활용계획)
2. 기존 용역과의 유사성·중복성 사전 검토결과
3.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제10조(용역 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직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 실명 대상 직원은 용역담당 부장, 팀장, 담당자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주관 팀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진행 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용역과제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용역진행 중 1회 이상 용역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용역수행기관과 향후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1개월 이내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담당자,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결과 공개 등)** ① 사장은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용역완료 후 용역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경영공시시스템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용역과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기피·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 · 기피 ·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9조 관련)]

## 용역과제 심의요청서

연 번		주관부서	
연구용역 과제명			
심의 안건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radio"/> 용역개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용역기간 :</li><li>- 용 역 비 : 친원</li><li>- 과제내용 :</li></ul></li></ul>		
필 요 성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계약방식 및 수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radio"/> 계약방법: <input type="checkbox"/>입찰 <input type="checkbox"/>수의계약<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의계약 시 사유 기재</li></ul></li><li><input type="radio"/> 수행(연구) 방식: <input type="checkbox"/>위탁형 <input type="checkbox"/>공동연구형 <input type="checkbox"/>자문형</li></ul>		
유사용역사례 (최근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사한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 기존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첨부</li></ul>		
팀장		담당자	
※ 불임: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부서의 장 직위: 성명: (서명)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제9조 관련)]

## 기존 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연구용역 과제명	
용역 실행계획	<input type="radio"/> 용역기간, 일정, 주요 내용 등
용역결과 활용방안	<input type="radio"/>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유사선행 연구용역 (최근5년간)	<input type="radio"/> 용역명 <input type="radio"/> 주요내용 등
기존 용역과의 차별내용	<input type="radio"/> 기존 용역과의 차별성 등

### [별지 제3호 서식(제11조 관련)]

용역과제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란에 “O”로 표기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란에 기재한다.

용역과제 심의위원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제12조 관련)]

## 용역 진행상황 점검서

용역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radio"/> 사업명:</li><li><input type="radio"/> 주요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li>-</li></ul></li></ul>				
용역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radio"/> 계약방법: <input type="checkbox"/>입찰 <input type="checkbox"/>수의계약</li><li><input type="radio"/> 수행(연구) 방식: <input type="checkbox"/>위탁형 <input type="checkbox"/>공동연구형 <input type="checkbox"/>자문형</li><li><input type="radio"/> 계약금액: 천원</li><li><input type="radio"/> 계약(용역)기간:</li><li><input type="radio"/> 연구자(연구기관):</li></ul>				
점검일자 및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자 (담당자)	확인자		비고
			주관부서팀장	주관부서장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radio"/>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ul></li><li><input type="radio"/>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을 가능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ul></li><li><input type="radio"/>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ul></li><li><input type="radio"/>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ul></li></ul> <p>* 용역의 특성 및 과업지시내용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하여 사용</p>				
조치사항					

[별지 제5호 서식(제13조 관련)]

## 용역결과 평가서

과제명 :	연구기관/연구원
과제담당관 / 담당자 / 평가전문위원	연구기간
연구방식(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연구자선정방식 (경쟁, 수의)

주요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3. 계역내용의 충실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평가결과(총평)						
평 가 자	과제담당관 / 담당자 / 평가전문위원	(서명)				

[별지 제6호 서식(제15조 관련)]

## 기피신청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과제명:

위 과제 심의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원(장)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신청원인: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